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73

발의연월일: 2020. 12. 31.

발 의 자:한병도·정태호·정일영

송영길 · 이광재 · 윤준병

김승원 • 권인숙 • 강민정

신영대 · 김민석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에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률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도 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특히, 도시내 대부분의 보행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주거나 상업지역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로 구성(서울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도로의 76.5%가 12m 미만 좁은 도로임)되어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

급한 상황임.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2019.4.6.)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에서도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 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 사망자가 한 해 평균 1,313명(하루 3. 6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 하였음.

이에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 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제17조의2·제17조의3 신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일시적인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 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법률 제 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제2조제3호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차마의 통행방법 제한
 - 2. 차마의 운행속도 제한
 - 3. 차마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

- 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 다.
- ⑤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⑥ 특별시장등은 제5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 2. 속도저감시설
 -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해

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9조의 제목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의 비치)"를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자전용길의"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행자전용길"을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 |
| <u> <신 설></u> | 3.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자 | | | |
| | 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 | | |
| |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 | | | |
| | 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 | | |
| | <u>를 말한다.</u> | | | |
| <u> <신 설></u> | 제17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의 지 | | | |
| | 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제2조 | | | |
| | 제3호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 | | | |
| | 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 | | | |
| | 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 | | | |
| | 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 | | | |
| | 로 지정할 수 있다. | | | |
| |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우선도 | | | |
| | 로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 | | | |
| |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 | | | |
| | 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 | | |
| |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 1. 차마의 통행방법 제한 | | | |
| | 2. 차마의 운행속도 제한 | | | |
| | 3. 차마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 | | |

-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 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 여 알려야 한다.
- ⑤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 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 자우선도로의 지정 목적이 상 실되었을 경우에는 보행자우선 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 제할 수 있다.
- ⑥ 특별시장등은 제5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변경하 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 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 설>

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
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 2. 속도저감시설
-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
 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 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 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제19조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의 비치) ① 특별시장등은 제 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 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자전용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u>보행</u> <u>자전용길</u> 관리대장을 작성·보 관하여야 한다.

| <u> 기설</u> | 설 등은 | . 행기 | <u>정안</u> | 전부의 | 라 크 | 토 |
|-------------|----------------|-----------|-----------|-----------|----------|------------|
| 교통 | 통부의 | 공동. | 부렁 | 으로 | 정ㅎ | 는 |
| <u>기</u> 급 | 존에 따 | 른다. | | | | |
| 제193 | 조 (<u>보</u> 형 | 가전 | 용길 | <u> 등</u> | 의 관 | <u>리</u>) |
| 1 | | | | | | - <u>제</u> |
| <u> 163</u> | 존제1항역 | 에 따 | 른 | 보행 | 자 전 | 원 |
| <u>길</u> 고 | 가 제17: | 조의2 | 제1호 | 항에 | 따른 | <u>보</u> |
| 행ス | 나 우선도 | 로를 | 지 | 정하 | 겼을 | 때 |
| 에는 | - 매년 | <u></u> _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u>년</u> | _ 행 |
| 자진 | 선용길 | 및 | 上 t | 행자수 | _ -선도 | :로 |
| | | | | | | |
| | | | | | | |